

主題

## 2004년 소프트웨어 보호정책의 추진방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교 용

차 례

- I. 들어가며
- II.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동향
- III. 2004년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 보호정책의 추진방향
-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2003년 초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금의 반도체와 휴대폰처럼 5~10년 후 우리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 왔었다. 대통령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부처 및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문민정부의 CDMA와 국민의 정부의 IT를 성공사례로 들면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과 성공적인 추진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 8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회’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전략산업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약·장기,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분야로, 전자·정보통신 기반의

유망 부품 및 시스템 중심으로 구성되어졌다.

이들 신성장 동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느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 그야말로 미래의 우리경제를 견인해 나갈 고부가가치의 핵심 전략산업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IT산업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sup>1)</sup>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보유한 우리로서는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경제발전 전략을 구상하여야 함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며, 이러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 역할이 바로 소프트웨어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IT) 산업의 구조는 정보통신 네트워

1) 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개념상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양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양자의 구별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크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최고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양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문구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 지배하는 정보화사회의 중심에 서 있음을 절실히 표현해 준다.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들도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라는 지적재산은 유통에 있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국제시장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전 세계에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철저한 보호달성이 관건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좋은 예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 권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2002년부터 매년 3~4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미통상 연례회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를 별도의 독립된 회담 주제로 선정하여 자국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본 등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무형의 재산인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

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우리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력자원의 풍부함이 우리의 장점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창작물로서 부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창작과 보호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sup>2)</sup>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체 생산액은 2002년 17조 8천억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약 38조원으로 연평균 16.6%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프트웨어 생산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46%에서, 2007년에는 2.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도 2002년에 전년대비 21.9% 증가한 3억 7,993만 달러로 나타났다.<sup>3)</sup> 이러한 결과는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만 하는 소비국의 입장에서 점차 벗어남과 동시에, 다른 어느 국가 못지않게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고에서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2004년도 소프트웨어 보호정책의 추진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 II.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동향

### 1. 세계 소프트웨어 보호 동향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 전망(2003~2007)’, 2002

3) 정보통신부, 2003 정보통신백서, 129면

국제사회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그 어떤 상품보다도 시장지배력이 강한 상품임을 인식하였고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저작물의 하나로 취급하여 보호하는 국제조약<sup>4)</sup>이 성립되었으며, 세계 각 국은 예외없이 이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자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보호 법제를 강화하도록 요구되어졌다.

소프트웨어를 저작물의 하나로 취급하여 저작권적 보호방식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고자 한 결과였다. 즉, 저작권적 보호방식은 등록이나 등기와 같은 일정한 방식이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개발(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하여, 동시에 전 세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권리보호 기간도 창작 후 50년 동안이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등은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과의 다자간 또는 양자간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하거나, 통상회담시 주요 이슈로 지적재산권 분야를 선정하여 자국의 보호 기준에 부합해서 상대방 국가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국에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법·제도의 개선이고, 둘째는 강력한 법 집행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보장이다.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형사상 형벌의 형량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일시적 복제와 접근통제 개념의 수용, 각종 예외 규정들의 축소 등을 요구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집행과정 및 집행결과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EU등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야의 강국들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자국 소프트웨어가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적 소프트웨어의 보호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련의 국제적 보호 움직임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배가 곧 세계 정보통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움직임은 향후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2. 국내 소프트웨어 보호 동향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일천했던 소프트웨어 보호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다른 어느 국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일반 저작권법에 포함시켜 규정한 것과 달리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한 입법의 필요성, 단일분야를 취급함으로써 침

4)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1996년 성립된 세계지적재산권기  
구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이 있다.

단기기술의 영역확대 등 세계 동향변화에 손쉽게 대처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법제도의 연계성 유지 및 체계적 관리 운용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1986년에 제정하였다.<sup>5)</sup>

이러한 입법태도는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국내·외적 동향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하여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꾸준한 홍보와 계몽 그리고 적절한 단속활동으로 1994년 75%이던 불법복제율을 2001년 기준으로 48%로 감소시켰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권을 도입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행정적 노력에 만전을 다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확실히 근절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지난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바 있다. 특별 사법경찰권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임업, 해사,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이들 사항을 관장하는 관련 공무원에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는 질서 유지차원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단속'을 그 수행방법으로 이용하였지만 특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이제부터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보전 등을 위하여 '수사'를 그 수행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행정단속과 수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혀 다르다. 행정단속의 경우는 범법행위의 처벌에 우선권을 두기보다는 사회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질서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그 효과도 대체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그치게 되는 반면에,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형벌의 부과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우리의 보호정책 방향에 대하여 과보호라는 비판의 견해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IT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선진화된 보호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III. 2004년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 보호정책의 추진방향

#### 1. 비전 및 추진목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에 의해 1986년 설립된 법정 독립 위원회로 프로그램저작권을 비롯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권리분쟁에 관하여 알선·조정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보호 및 일반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향하는 비전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선도해 가는 세계 최고의 IT지적재산권 보호강국 건설이며,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선진화,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문화정착, 선진국 수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진입,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종합관리·서비스 체계 공이라는 2004년 목표를 설정하였다.

5) 송상현·김문환·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측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2. 주요 추진내용

### 가.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확립

#### 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심의·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사항 심의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고유의 핵심적 업무이자 국민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제도이다. 1994년 도입된 분쟁조정 제도는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확실한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제도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법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로 시간적 신속성과 해결주체의 기술적·법적 전문성 그리고 비용의 경제성 측면이 탁월한 분쟁조정 제도는 적극 활용되고 이용되어져야 할 제도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기능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보호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실로 크다. 특히 인터넷 중심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에 대한 심의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능으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4년 심의기능과 분쟁조정제도의 실질적 내실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위원회 내에 직접 설치하여 신고 또는 발견 즉시 신속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조정을 위하여 온라인 상담·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② 소프트웨어 감정의 전문화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은 대부분 불법으로 복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기계어로 구성된 관계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2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시 감정실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sup>6)</sup>

그 전에도 감정이 실시되긴 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2002년을 기점으로 감정신청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법원, 검찰의 요청에 의한 감정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전문 감정기관의 부재로 인해 정황증거 위주의 수사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졌으나 전문감정의 수행으로 권리침해 여부의 증거가 손쉬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복제 여부를 판별하는 복제도 감정은 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는 중요한 제도로 그 전문화가 절실하다. 감정의 전문화를 위해 유형별 감정기법 표준지침 제정과 표준화된 감정도구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감정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며, 보다 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을 위하여 감정결과에 대해 감정전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감정이 활용되는 주 분야가 복제도 감정이지만,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감정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가치감정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도 적극 수행할 것이다.

#### ③ 소프트웨어 등록의 활성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발생은 등기, 등록과 같은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에 의하지만, 등록제도는 권리자의 권리보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8조의2 참조

호를 위한 수단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관하여는 저작권자로 추정을 하며, 또한 등록시 기재한 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의 권리추정 효과로 인해서 등록된 S/W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침해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등록의 장점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등록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집중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동일한 프로그램의 중복개발을 막을 수도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경제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3년 기준으로 9만 7천 건이 등록되었으며, 최근에는 매년 1만 건에 달하는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등록제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등록의 효율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민원인이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개발·구축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시범 테스트를 거쳐 조만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등록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등록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등록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④ 소프트웨어 임치의 선진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회적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IT업계는 아직도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가 바로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이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는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관련 정보들을 위원회에 임치하고, 향후 개발자에게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보 등을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사장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임치제도는 개발자와 이용자, 나아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도 감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도입되었고<sup>7)</sup>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최근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임치는 타인의 재산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위험이 수반되므로 안전한 물적·인적 시설의 완비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되어 진다.

위원회는 2004년 임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선진화 기법의 도입 및 임치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나. 소프트웨어 공정이용환경 조성

##### 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교육 및 정품사용 홍보 강화

소프트웨어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법률의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보호의식 교육 및 정품사용 홍보의 강화를 통한 건전한 소프트웨어 이용문화 정착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 참조

하는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도 지적재산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개최, 업종별 종사자 대상의 체계적인 방문교육,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만화교재 발간·배포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신문사 등 언론매체와의 공동캠페인 실시, 영상홍보물 및 차량·PC용 스티커 제작, 가두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② 소프트웨어 공정이용 문화 보급 및 확산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권리자의 권리남용 방지를 통한 공정이용 문화의 보급 및 확산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질서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어 진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몇몇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독과점 형태를 띄고 있어, 부당한 가격책정이나 지나치게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이 개발되기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보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게되는 사회적 효용이 더 크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공정이용 문화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자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및 합리적 이용방법을 안내하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소프

트웨어 저작권사와 이용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정이용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 및 라이선스 정책의 유도과 정품사용의식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다. 소프트웨어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활동 강화

##### 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법·제도 조사·연구 강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므로 그 사용영역이 국내·외를 구별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 정책 및 법·제도 등은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몇몇 주요국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국내 정책과 법·제도 등은 결국은 국제적 여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보호와 관련된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제도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보호 정책 및 법·제도에 반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 및 국제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각종 조사·연구의 결과를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의 입법·정책 동향 조사 보고서, 국내·외 주요판례 평석집, 관련법령 해설서 발간을 통해 관련 산업종사자들 또는 정책결정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IT지적재산권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

##### ②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조사 및 경제적 효과분석

매년 5월이면 미국의 BSA<sup>8)</sup>(사무용소프트웨어

연합)가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발표하고 이를 한·미 통상회담시 주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 BSA발표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50%이며, 그로 인한 손실액은 4억 2천만 달러로 추산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불법복제율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대국민 의식 계몽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집중단속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 90년대 초 80%에 육박하던(BSA 발표 자료 기준) 불법복제율이 48%까지 낮아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20~30%대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의 후진국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1999년부터 독자적으로 불법복제율 조사 및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불법복제율 조사모델 개발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BSA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복제율 조사방식이 우리의 법·제도와 현실을 도외시한 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결과를 통상 회담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법·제도에 맞는 한국형 불법복제율 조사모델을 개발하고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델에 의해 산출된 불법복제율에 근거하여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③ 국제활동 및 국제통상대응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를 그 시장

8) Business Software Alliance

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쟁점은 곧 국내 정책 결정의 가장 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국제적 요구사항이 때로는 우리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들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활동을 강화하여 선진 각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제활동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sup>9)</sup>등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교류확대 및 APEC-IPEG(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지적재산권전문가그룹)회의<sup>10)</sup>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활동에 더하여 민·관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아시아·태평양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포럼』의 결성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긴밀성을 더욱 공공히 할 계획이다.

### 라. 소프트웨어 종합관리체계 기반구축

#### 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정보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록된 많은 소프트웨어와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연구자료는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 활용되어질 때만이 그 가치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는 메인 홈페이지(www.pdmc.or.kr)DB자료실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IT지적재산권 정보제공

9)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0)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Expert group



전문 웹사이트<sup>11)</sup>인 itnlaw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 또는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국내·외 지적재산권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IT지적재산권 정보·컨설팅 제공 전문사이트로 부상시킬 계획이다.

#### ②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은 원격지에 있는 권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향후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의 집중관리 및 이용촉진을 위한 Market Place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2003년 초 시작된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이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자체적인 시험테스트와 결함보정의 수준에 와 있다. 일정기간의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조만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온라인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그동안 등록되지 않아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권리자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소프트웨어 보호 동향, 그리고 국내의 법·제도 등 보호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소프트웨어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비전과 추진목표, 2004년 소프트웨어 보호정

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성과를 거두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정보통신 분야에 세계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IT강국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2,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화 중심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불법복제율과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문화의 미정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재산권에 대한 통일적 보호체계 미정립,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등 사회적 기반미약,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진흥정책과 보호정책간의 괴리 등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IT입국의 대로를 질주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 등 IT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공정한 이용문화 의식정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1) www.itnlaw.or.kr

## 참고문헌

- [1] 정보통신부, 2003 정보통신백서, 2003
- [2] 정보통신부, 2003년도 S/W산업육성 기본 계획(안), 2003
-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3년도 S/W산업 년차보고서, 2003
- [4]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년도 S/W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이용사업계획, 2003
- [5] 서울대출판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측조연구, 1989
-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2003~2007), 2002
- 1997. 1.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 1998. 3.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 1998. 6.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1999. 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관리관)
- 2000. 7. 우정사업본부장
- 200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사
- 2003. 9.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이 교 용

- 1975. 2.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1988. 6. 프랑스 파리 국제행정대학원 졸업(공기업 경영학 석사)
- 1989. 9. 프랑스 파리 9대학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관리학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체신행정대학원 수료
- 1995. 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40기) 수료
- 1996. 12. 국방대학원 안보과정(16기) 졸업
- 2003. 8.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 1975. 3.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1. 7.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협력과장
- 1993. 7. 체신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 1993. 9. 체신부 UPU서울총회 준비사무국장
- 1994. 11.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관
- 1995. 6. 충청체신정장